

보도시점 2026. 6. 14.(일) 12:00 / 배포 2026. 6. 12.(금) 08:30
< 6. 15.(월) 조간 >

(주)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 부과 -

※ 주말 엠바고 주의 : 6월 14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주)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보일러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2024년 기준 매출액 1조 2,469억 원)

(주)경동나비엔은 2021. 6. 17. ~ 2024. 6. 14.까지 98개 수급사업자에게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중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법 제3조의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거래의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로 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추어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3조에서 서면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의무화한 취지는 향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명확한 증거로 활용하여 계약사항이 불분명함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4두12780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법 2003누17773 판결 등).

그러나 (주)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 이름을 서명하여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단가합의서는 양식 자체에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있고 원사업자의 서명란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법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Ⅲ. 3. (6)에서도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경동나비엔이 반복적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추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상향,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위반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하도급법 상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등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26.4.30.~5.20)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위반행위의 중대성	현행			개정안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기준표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80%	9억~20억원	2.2 이상	90%~100%	18억~20억원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60%	2억~9억원	1.4 이상 2.2 미만	75%~90%	15억~1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40%	4천만원~2억원	1.2 이상 1.4 미만	50%~75%	10억~15억원
				1.2 미만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시 관행적으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온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명 누락 등 서면미발급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 (주)경동나비엔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책임자	과 장	이태휘 (044-200-5002)
		담당자	서기관	오정화 (044-200-5003)



1. (주)경동나비엔(대표이사: 손연호, 손홍락, 장희철)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9년	461,607	655,419	20,474
2020년	535,512	746,325	18,888
2021년	667,507	951,116	62,279
2022년	716,145	979,558	43,696
2023년	745,348	995,005	46,331

※ 출처: NICE평가정보(www.nicebizline.com)

2.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 ③ 법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④ 법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 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본계약서 또는 개별계약서에 위탁일, 품명, 수량, 단가, 하도급대금, 납기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 (2)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 (3) 법정기재사항의 일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업종의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 (4)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본다.
- (5)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물품을 제조위탁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6)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